



서울연구원  
The Seoul Institute

서울연구원

---

#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(안)

2018. 1.

감 사 실

# 서울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(안)

## 추진근거

-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3호(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)

## 주요내용

- 서울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
  - 제11조(재산의 사적사용·수익금지)
    - 연구원 예산으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,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적 사용 금지 내용 추가
  - 제29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
    - 2018.1.1자 신설된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변경 및 청탁방지담당관을 겸직 지정

## 시행일

-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붙임 : 신구조문대조표 참조

## 신구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재산의 사적사용·수익 금지) 업무용 차량,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,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제29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 ① 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<u>기획조정본부장</u>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 1 ~ 4호(생략)  〈신설〉</p> <p>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</p>	<p>제11조(재산의 사적사용·수익 금지) 업무용 차량,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,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재산<u>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,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</u>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제29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 ① 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<u>감사실장</u>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 ~ 4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행동강령책임관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.</p> <p>④〈조문이동〉 <b>현행 제③항과 동일</b></p>